

발행·편집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 440-2221, FAX 440-2583)



화 천 군

군 보

www.ihc.go.kr

제299호 2021년 7월 7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문

1.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5
2.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8
3.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4.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5.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1
6.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7.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8.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9.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42
10.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63
11.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칙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76호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것을 제외하고**”를 “**것 외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등에 있어**”를 “**등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현금**”을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유(가)족**”을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을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u>관하여 필요</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u>것을 제외하고</u>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p> <p>제4조(기준) ①·② (생략)</p> <p>③ 자동차에 관한 <u>제증명 등에 있어</u>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p>	<p><u>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 ----- ----- ----- <u>필요</u>----- ----- .</p> <p>제2조(적용) ----- ----- <u>것</u> <u>외에</u>----- ----- .</p> <p>제4조(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등에서</u> ----- ----- ----- -----</p>

며, 위와 같이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계기, 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인영에 따르며, 납부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1. ~ 4. (생략)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
-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

-----.

제5조(징수 방법) ① -----

----- 현금, 신용카드 등 -----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
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
하는 경우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4조-----

<p>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p> <p>7. (생 략)</p> <p>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p> <p>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u>해당 된다</u>)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p> <p>10. (생 략) ②·③ (생 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p> <p>7. (현행과 같음)</p> <p>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 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 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 는 경우</p> <p>9. ----- ----- ----- ----- <u>해당</u> 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 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 청하는 경우</p> <p>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 <u>필요</u>----- -.</p>
---	---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77호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제출)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실적 보고)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78호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6조관련)

유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A형)	
	군 지원금	이용자 실 부담금
가형	본인부담금의90%	본인부담금의10%
나형	본인부담금의80%	본인부담금의20%
다형	본인부담금의70%	본인부담금의30%
라형	본인부담금의50%	본인부담금의50%

※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B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지원금은 시간제서비스(기본형 A형) 지원금액

기준으로 지원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6조 관련)

유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A형)	
	군 지원금	이용자 실 부담금
가형	본인부담금의90%	본인부담금의10%
나형	본인부담금의80%	본인부담금의20%
다형	본인부담금의70%	본인부담금의30%
라형	본인부담금의50%	본인부담금의50%

- ※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B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지원금은 시간제서비스(기본형 A형) 지원금액 기준으로 지원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담당자 확인
						서비스형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취업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p>※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p> <p>※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p> <p>※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p>						
<p>『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화 천 군 수 귀 하</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정비>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6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유형</th> <th rowspan="3">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th> <th colspan="5">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th> </tr> <tr> <th colspan="2">A형 (만0세~7세)</th> <th colspan="3">B형 (만8세~12세)</th> </tr> <tr> <th>정부 지원</th> <th>본인 부담</th> <th>정부 지원</th> <th>자체 지원</th> <th>본인 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가형</td> <td>60% 이하</td> <td>80%</td> <td>20%</td> <td>70%</td> <td>-</td> <td>30%</td> </tr> <tr> <td>나형</td> <td>85% 이하</td> <td>50%</td> <td>50%</td> <td>-</td> <td>50%</td> <td>50%</td> </tr> <tr> <td>다형</td> <td>120%이하</td> <td>30%</td> <td>70%</td> <td>-</td> <td>30%</td> <td>70%</td> </tr> <tr> <td>라형</td> <td>120%초과</td> <td>-</td> <td>100%</td> <td>-</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p>※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p>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A형 (만0세~7세)		B형 (만8세~12세)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자체 지원	본인 부담	가형	60% 이하	80%	20%	70%	-	30%	나형	85% 이하	50%	50%	-	50%	50%	다형	120%이하	30%	70%	-	30%	70%	라형	120%초과	-	100%	-	-	100%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6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유형</th> <th colspan="2">시간제서비스 기본형(A형)</th> </tr> <tr> <th>군 지원금</th> <th>이용자 실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가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의 90%</td>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의 10%</td> </tr> <tr> <td>나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의 80%</td>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의 20%</td> </tr> <tr> <td>다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의 70%</td>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의 30%</td> </tr> <tr> <td>라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의 50%</td>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의 50%</td> </tr> </tbody> </table> <p>※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p> <p>※ 시간제서비스(기본형 B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지원금은 시간제서비스(기본형 A형) 지원금액 기준으로 지원</p>			유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A형)		군 지원금	이용자 실부담금	가형	본인부담금의 90%	본인부담금의 10%	나형	본인부담금의 80%	본인부담금의 20%	다형	본인부담금의 70%	본인부담금의 30%	라형	본인부담금의 50%	본인부담금의 50%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A형 (만0세~7세)		B형 (만8세~12세)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자체 지원	본인 부담																																																																																																																																																																																																																																									
가형	60% 이하	80%	20%	70%	-	30%																																																																																																																																																																																																																																									
나형	85% 이하	50%	50%	-	50%	50%																																																																																																																																																																																																																																									
다형	120%이하	30%	70%	-	30%	70%																																																																																																																																																																																																																																									
라형	120%초과	-	100%	-	-	100%																																																																																																																																																																																																																																									
유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A형)																																																																																																																																																																																																																																														
	군 지원금	이용자 실부담금																																																																																																																																																																																																																																													
가형	본인부담금의 90%	본인부담금의 10%																																																																																																																																																																																																																																													
나형	본인부담금의 80%	본인부담금의 20%																																																																																																																																																																																																																																													
다형	본인부담금의 70%	본인부담금의 30%																																																																																																																																																																																																																																													
라형	본인부담금의 50%	본인부담금의 50%																																																																																																																																																																																																																																													
<p>[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10">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인</td> <td>성명</td> <td colspan="2"></td> <td>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주소</td> <td colspan="8"></td> </tr> <tr> <td rowspan="3">서비스 이용 대상자</td> <td>신청인과의 관계</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td> <td>신청인과의 동거여부</td> <td>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td> <td colspan="4"></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시간제 B형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td> <td colspan="4"></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시간제 B형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td> <td colspan="4"></td> </tr> <tr> <td>연락처</td> <td>가택</td> <td colspan="2"></td> <td>휴대전화</td> <td colspan="5"></td> </tr> <tr> <td>입금계좌</td> <td>금융기관명</td> <td colspan="2"></td> <td>예금주 (신청인)</td> <td colspan="5">계좌번호</td> </tr> <tr> <td>양육공백 유형</td> <td>취업 안부 <input type="checkbox"/></td> <td>학업이 <input type="checkbox"/></td> <td>다자녀 <input type="checkbox"/></td> <td>질병부 <input type="checkbox"/></td> <td colspan="5">기타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colspan="10">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면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td> </tr> <tr> <td colspan="10">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천군수 귀하 </td> </tr> <tr> <td colspan="10"> 본인은 이 간 일부처리와 관련된 과세 부담이 「간접과세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이용을 위하여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td> </tr> </tbody> </table>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 B형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B형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가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취업 안부 <input type="checkbox"/>	학업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질병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면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천군수 귀하										본인은 이 간 일부처리와 관련된 과세 부담이 「간접과세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이용을 위하여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p>[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10">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신청인</td> <td>성명</td> <td colspan="2"></td> <td>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8"></td> </tr> <tr> <td rowspan="3">서비스 이용 대상자</td> <td>신청인과의 관계</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td> <td>신청인과의 동거여부</td> <td>담당자 확인 서비스형</td> <td>소득유형</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3"></td> </tr> <tr> <td>연락처</td> <td>자택</td> <td colspan="2"></td> <td>휴대전화</td> <td colspan="5"></td> </tr> <tr> <td>입금계좌</td> <td>금융기관명</td> <td colspan="2"></td> <td>예금주 (신청인)</td> <td colspan="5">계좌번호</td> </tr> <tr> <td>양육공백 유형</td> <td>취업 안부 <input type="checkbox"/></td> <td>학업이 <input type="checkbox"/></td> <td>다자녀 <input type="checkbox"/></td> <td>장애투 <input type="checkbox"/></td> <td colspan="5">기타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colspan="10">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면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td> </tr> <tr> <td colspan="10">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천군수 귀하 </td> </tr> <tr> <td colspan="10"> 행정청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간 일부처리와 관련된 과세 부담이 「간접과세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이용을 위하여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td> </tr> </tbody> </table>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담당자 확인 서비스형	소득유형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취업 안부 <input type="checkbox"/>	학업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면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천군수 귀하										행정청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간 일부처리와 관련된 과세 부담이 「간접과세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이용을 위하여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 B형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B형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가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취업 안부 <input type="checkbox"/>	학업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질병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면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천군수 귀하																																																																																																																																																																																																																																															
본인은 이 간 일부처리와 관련된 과세 부담이 「간접과세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이용을 위하여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담당자 확인 서비스형	소득유형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취업 안부 <input type="checkbox"/>	학업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면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천군수 귀하																																																																																																																																																																																																																																															
행정청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간 일부처리와 관련된 과세 부담이 「간접과세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이용을 위하여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79호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훈단체지원)**”을 “**(보훈단체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한다.

제10조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3. 잘못 지급 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잘못 지급 된 경우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u>필요한</u> ----- ----- --.</p>
<p>제6조(<u>보훈단체지원</u>)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u>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u></p>	<p>제6조(<u>보훈단체 지원</u>)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u></p>
<p>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배제) 「<u>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 제38조, 제39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p>	<p>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배제)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 ----- ----- ----- -----.</p>
<p>제11조(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p>	<p>제11조(수당의 환수) ① -----</p>

<p>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p> <p>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 된 경우</p> <p><신 설></p> <p>② (생 략)</p>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 -----.</p> <p>1. <u>거짓이나</u> ----- -----</p> <p>2. ----- ----- -- <u>경우</u></p> <p>3. <u>잘못 지급 된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행규칙) ----- - <u>필요한</u>----- -----.</p>
--	---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규칙 제1181호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식 정비>

현 행					개 정 안				
■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호등록번호					보호등록번호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접수	접수일자	전입일	접수번호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 담당자				
■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호등록번호					보호등록번호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수 료 없 음									
접수	접수일자	전입일	접수번호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 담당자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참전유공자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80호

화천군 참전유공자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81호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0세이상”을 “20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연주회 행사비
2.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3. 단위 역량교육 강사비

4.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자격) ①·② (생략)</p> <p>③ 단원은 화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u>20세이상</u> 65세 미만의 여성으로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p>	<p>제6조(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20세 이상</u> ----- ----- -----.</p>
<p>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① (생략)</p> <p>②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u>별지 제1호 서식</u>의 응시원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별지 제1호서식</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u>아니한</u> 경우</p> <p>3. ~ 5. (생략)</p>	<p>제8조(해촉)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않은</u>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12조(경비의 지원) <u>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u>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경비의 지원) <u>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u>를 지원</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u>1. 정기연주회 행사비</u><u>2.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u><u>3. 단원 역량교육 강사비</u><u>4.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u>
---	---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82호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이상의**”를 “**이상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윈드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연주회 행사비

2.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3. 단원 역량교육 강사비
4.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격) ①·② (생략) ③ 단원은 화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u>이상</u> 의 사람으로서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이상인</u> ----- ----- -----.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① (생략) ② 지휘자, 단무장,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u>별지 제1호 서식</u> 의 응시원서를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별지 제1호서식</u>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오케스트라의 임무를 지키지 <u>아니한</u> 경우 3. ~ 5. (생략)	제8조(해촉) ----- ----- -----. 1. (현행과 같음) 2. ----- ----- <u>않은</u> ----- -----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경비의 지원) <u>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케스트라의 활동</u>	제12조(경비의 지원) <u>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윈드 오케스트라</u>

<p><u>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기연주회 행사비</u> <u>2.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u> <u>3. 단원 역량교육 강사비</u> <u>4.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u>
---	--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83호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해당종목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화천군체육회장, 화천교육지원청 체육담당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화천군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회장 및 이사
3.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4. 그 밖에 체육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화천군체육회장이 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제3조의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수당과 여비)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체육단체 지원

제11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화천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화천군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며, 그 밖에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화천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화천군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체육회 등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체육진흥 및 육성

제14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육성지원
2.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교체육의 육성
2.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17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단, 학교시설 이용시 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6.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9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장 관리·감독

제21조(보고·검사)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체육회 등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84호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 ④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면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피복비, 물품 및 장비구입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지명·선출된 단장·부단장·간사·대표 등과 방재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 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에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화천군 지역자율방재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인)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란 ~을 말합니다.
2.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활동계획서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div> <p>사 진 (3×4cm)</p>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7.7 c m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
화천군수 (인)	

바탕 배경에 군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p>제출서류</p>	<p>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p>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급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급계좌확인정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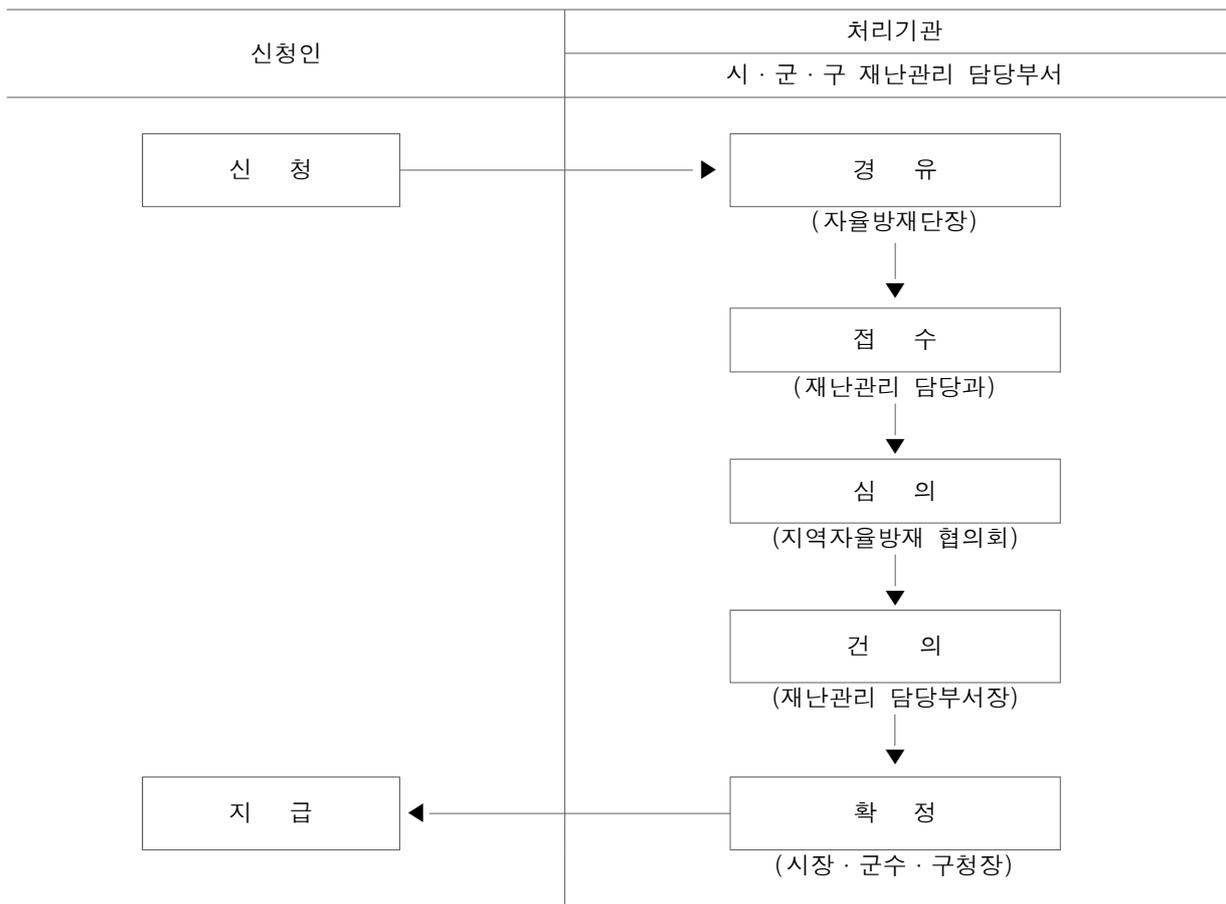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1.6.2.) 및 제264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7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85호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의뢰 할**”을 “**의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기일내 에**”를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기일 내 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통보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1조 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발급받고자**”를 “**재발급 받고자**”로 한다.

제16조 중 “**언어**”를 “**받아**”로, “**언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송처치료”를 “이송 처치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비급여는 제외)

제24조제1항제8호(중전의 제7호) 중 “군실업팀”을 “군 실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감면유가족”을 “감면 유가족”으로,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5호~제9호”를 “제1항제5호~제10호”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제출하며 별표 5에 의한 구급차 이송 처치료(이하 “이송 처치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진료비·이송 처치료·수수료 감면 등) ① 군수는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 통보하여야 ----
----.

제13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11조 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재발급 받고자 -----

-----.

제16조(배차신청) -----

-- 받아 -----

----- 받은 -----.

제24조(진료비·이송 처치료·수수료 감면 등) ① -----
-- 이송 처치료 -----

-----.

- 1. ~ 3. (생략)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외래 진료비 등.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일부 부담금(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함
- 5.·6. (생략)
- <신설>
- 7. 군실업팀 선수 중 운동과 관련된 질병 중 외래 진료

- 1. ~ 3. (현행과 같음)
- 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6. (현행과 같음)
- 7.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비급여는 제외)
- 8. 군 실업팀 -----
--

8. ~ 11. (생략)

② 진료비·이송 처치료·수술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생략)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감면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3. 제1항제5호~제9호-----

9.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감면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3. 제1항제5호~제10호-----

<p>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25조(시행규칙) ----- <u>필요한</u>----- -----.</p>
---	--